瑞山市簡易上水道·小規模汲水施設管理條例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2000. 12. 20
産業建設委員會

1.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 2000. 12. 12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2000. 12. 13

라. 上程日字 : 2000. 12. 20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上下水道事業所長 文英燮)

가. 提案理由

o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2제2항 근거로 그동안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개정된 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토록 함(안 제14조).

사.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운용토록 함(안 제17조).

아. 간이급수시설의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함(안 제20조).

자.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제21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o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법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써

o 공동으로 사용되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법령에 근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에는 협의회를 구성 대표자로 하여금 관리·운영토록하여 책임감과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였음.

o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에게 깨끗한 음용수 공급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 안 번 호	제 187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12. . (제 회)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12. 12 .

서산시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07 호

제출년월일 : 2000. 12. 12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 이유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코자함

2. 주요골자

○조례제명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함.

○종전에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함에 기간의 명시가 없던 것을 앞으로 5년마다 수립토록 명시함(안 제3조).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대책 수립토록 신설함(안 제10조).

○종전에 시설을 폐지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시장이 폐지를 결정토록 변경함(안 제11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도록함(안 제14조).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 인원을 5명내외로 선출하여 운영토록 명시함(안 제17조).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함(안 제20조).

○종전에 협의회 대표자에게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1조).

3. 참고 관련자료

가. 관련법령

-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2 제2항
- 수도법 제3조 제9호, 제13의2호
- 수도법 제4조
-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 제4조
-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2
-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예산 해당 없음, 추후 간이급수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 협의코자함

다. 입법 예고 2000. 5. 8. ~ 5. 27(20일간)

라. 특기 사항

○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278번지 김동윤씨로부터 긴급 복구사안 발생시 시 응급복구반(기술 및 장비)지원가능토록 조례안 10조에 명문화를 요구함.

- 조례안 제9조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를 "개·보수 비용 및 기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로 변경하여 개정토록 추진할 것을 통보함.

○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511번지 최근묵씨로부터 도서지역의 조수기시설 운영경비의 지원을 조례안 제14조에 명문화를 요구함.

- 조례안 제14조에 의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음을 기 통보하였으나 심의 과정중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간이급수시설로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고 심의되어 내용을 통보함.

서산시조례 제 호

서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

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 및 기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

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방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급수시설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건강진단) 관리자는 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비 용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하며,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또는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 4 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교육) 시장은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의거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관리 위탁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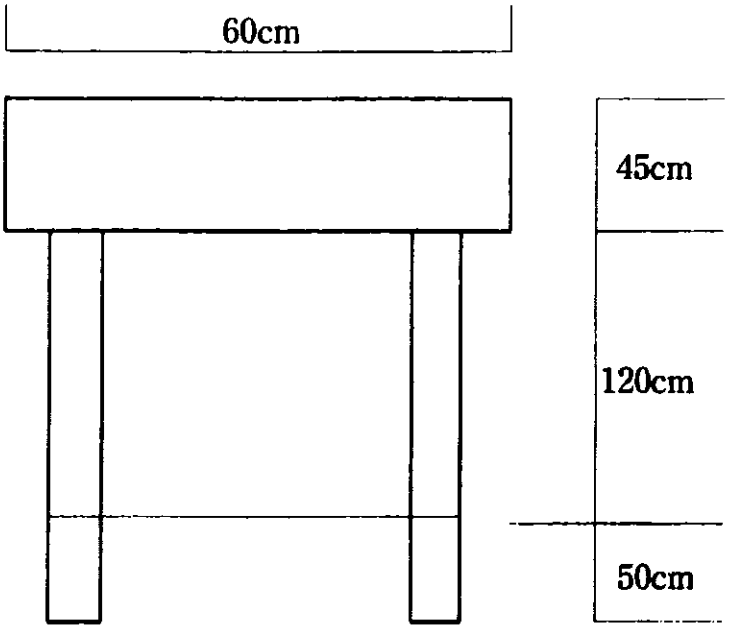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서산 ○○ - ○○○호
○위 치 : 서산시 ○○읍·면·동 ○○리
○시설용량 : ○○톤/일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서산시상하수도사업소(전화: 660-3532)

〔별지 제1호 서식〕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 양식(제4조제2항 관련)

관리번호	서산시 제 호										
구분	항목	내 역									
일반현황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읍·면·동 리 마을·부락									
	관리 위원장	성명		전화번호	(0455) -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분	내역	일자	국고보조		지방비		주민부담	기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 사업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현황	수원의 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 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시설내역	구분	재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집수정1				심도: m				
			집수정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내역	구분	재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시설	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종별 총연장(m)		
			관종	직경	연장	관종	직경	연장			
		소계		mm	m						
		소계		mm	m						
		소계		mm	m						
		총계			m						
급수현황	계획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현재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리터			
	제한급수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계: 일간			
수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전	검사기관	(개 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자						
개량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량내용					
	. .										
	. .										
	. .										
수원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 .	소요비용	만원					
	이전사유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간이급수시설 점검 대장

(제7조 제1항 관련)

관 리 번 호	서산시 제 호	점검 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취수원의 보호 · 관리상태			
o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o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o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o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o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상태			
o 오염물 제거	취수원 부근		
	배수지 부근		
o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o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등)의 유무			
o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o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o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o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o 기 타			

신·구문 대비표

현 황	개 정 안
서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 "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③ "사용자" 라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④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관리자" 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서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용자" 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서산시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계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 및 기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급수시설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건강진단) 관리자는 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 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하며,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신 설〉	제14조(관리비용)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또는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3조(협의회 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구성) 〈신 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현행 ②와 같음)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신 설〉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②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③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④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자 가구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3. (현행 2. 와 같음)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교육) 시장은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시설물의 운전, 소독, 경미한 보수)를 위탁 관리한다.	제21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의거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관리 위탁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규칙) (현행과 같음)